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크패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05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재섭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11.
- (3) 회 부 일 :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일명 ‘다크패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다크패턴을 통한 이익 취득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지로 작동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등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체가 수수료 할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당이익 취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다크패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1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과징금) <신 설>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 ----- -----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④ -----제1항 또

현행	개정안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는 제2항-----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다크패턴’¹⁾이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²⁾를 말하는데, 이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갱신·결제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불만이 누적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기존 법률³⁾의 적용이 어려웠던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제6항 및 제21조의2제1항은 앞서 언급한 6개 유형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⁵⁾

1)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은 영국의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2010년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해리 브링널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다크패턴이라고 정의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p.1

3)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4)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다크패턴 관련 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작위 의무	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법 제13조 제6항
부작위 의무	② (순차공개 가격책정) 표시·광고 첫 화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법 제21조의2 제1항
	③ (특정옵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④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인 금지	
	⑤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 방해 행위 금지	
	⑥ (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사항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개정안은 사업자가 부작위 의무인 5개 유형(현행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임.

- 5)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사이트에서는 기존의 다크패턴 행위들이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⁶⁾⁷⁾을 감안하면, 개정안에 따른 경우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크패턴에 한정하여 별도의 과징금 규정을 신설할지에 대하여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포함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계속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⁸⁾.

-
- 6) 다크패턴 규제 시행에도 어도비·유튜브 ‘요지부동’... ‘무료체험 후 자동 결제’ 여전(조선비즈, 2025. 2. 21.)
- 7) 서울시가 OTT·쇼핑멤버십·배달·승차·음악 스트리밍, 5개 분야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해지 단계의 다크패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복 간섭(92.3%) ▲취소·탈퇴 방해(84.6%) ▲잘못된 계층구조(소비자 오인 유도, 69.2%) 등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설계가 해지 과정 전반에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구독서비스' 월평균 4만원 지출, 해지 방해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보도자료, 2025. 4. 16.).
- 8)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

- 이처럼 현행법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법의 과징금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절차	위반행위→시정조치 →(시정조치 불이행 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과징금 부과
한도액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징액과징금 상한	5천만원	10억원

- 따라서,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타 위반행위⁹⁾와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달리 규율할 필요성에 대한 논

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9)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같이 다크패턴에 한해 별도로 규율할 경우에는 하나의 다크패턴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를 명할 수 있고 신설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적용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게 되고, 수범자 역시 법 적용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영업정지 규정을 두면서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함께 두고 있고¹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한 법률」 등은 경제적 이익 환수 성격의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음¹¹⁾).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범위만 유형(다크패턴)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징금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개정안 논의에 앞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 변경 필요성, 부과대상, 과징금 상한 및 산정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